



발행일 2020년 06월 1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최미경*

- 01 I. 서론
- 02 II. 국가수사본부 설치배경과 주요내용
- 04 III.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주요 쟁점
- 09 IV. 국가수사본부 설치 시 고려사항
- 10 V. 결론

요약

□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쟁점을 분석함

-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 조직으로 설치하는 논의에 대하여 경찰권 분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력기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찰수사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찰의 정보권과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하여 경찰권 남용의 우려도 있음

□ 국가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할 취지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사사무를 견제하는 외부장치의 확보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6788-4564
imp@assembly.go.kr

I. 서론

□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함

- 검찰이 60년 이상 보유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¹⁾,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체계의 틀을 마련함
-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정립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²⁾, 경찰-검사 수사체계의 현실적인 괴리를 해소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반면, 수사권 조정이 검찰권한의 분산·재편에 치중하여³⁾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조직을 정보경찰조직과 함께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⁴⁾

□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우려되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치경찰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2019년 3월 자치경찰 및 수사경찰 인사독립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TF”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⁵⁾

□ 이 보고서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⁶⁾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함

-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경찰권 분산이행여부, 경찰청 내 설치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실질적인 분리여부, 경찰수사에 대한 책임체계, 정보경찰과의 결합가능성 등을 분석함

1) 일부에서는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최대현 외,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가수사시스템의 발전방향 모색: 영국과 미국의 수사시스템을 참고하여』, 경찰청 정책연구 용역과제, 2017.)

2) 현재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자적 수사권, 독점적·편의적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이경렬,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2018.

4) 김선영 외, 「자치경찰제, 수사권과 묶으면 안돼.. 정보경찰 폐지해야[포스트 수사권 조정 어떻게]」, 『세계일보』, 2020.2.10., 허진,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서울경제』, 2019.12.30., 오창익, 「뭐가 경찰개혁인가」, 『경향신문』, 2020.1.30., 박기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비대해진 권한도 견제」, 『이데일리』, 2020.1.13., 한동훈, 「수사권 조정안 통과...이제는 경찰개혁안 도마위에 오른다」, 『서울경제』, 2020.1.13.

5) 허진무, 「행안부도 수사권 조정 후속 TF 설치,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 등 4개팀으로」, 『경향신문』, 2020. 2. 11., 안성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준비 기구 설치..경찰개혁법 상반기 완료 추진」, 『중앙법률신문』, 2020.2.1.

6) 국가수사본부 관련 법률안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외에도 김영호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진선미의원안, 곽상도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이 당·정·청이 합의한 사실상 정부안임. 이에 이 보고서는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분석함

II. 국가수사본부 설치배경과 주요내용

1. 설치배경

-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찰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됨
 - 2020. 2. 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수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지휘권⁷⁾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⁸⁾, 그 밖에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함⁹⁾
 - 이로 인해 현재도 국가경찰은 중앙집권화 된 약 12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치안·정보·경비·교통 등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 권한까지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을 통제·지휘하는 체계에서 형사법적 통제가 축소된 수사종결권한¹⁰⁾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정보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할 경우 경찰 정보권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견제가 어려운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표 11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검·경 관계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지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상호 협력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법령상 제한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수사종결 주체	검사 (경찰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사 조사→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검사 종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경찰 종결 경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자체종결

※ 자료: 필자정리

7) 현재 경찰은 수사개시단계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검사에게 각종의 사항을 보고·건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후속조치 대통령령(안)을 마련 중임(박경준, 「청, 수사권개혁 추진단 첫 회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착수」, 『연합뉴스』, 2020.2.21.)

8) 이 경우 경찰이 공소제기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9)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 또는 불기소)하였음.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판단은 검사에게만 있어 경찰은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었음. 향후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건을 자체종결 할 수 있음. 자체종결 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으나,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송부하여야함. 검사가 수사기록을 90일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문제가 없으면 수사기록은 경찰로 반환해야함)(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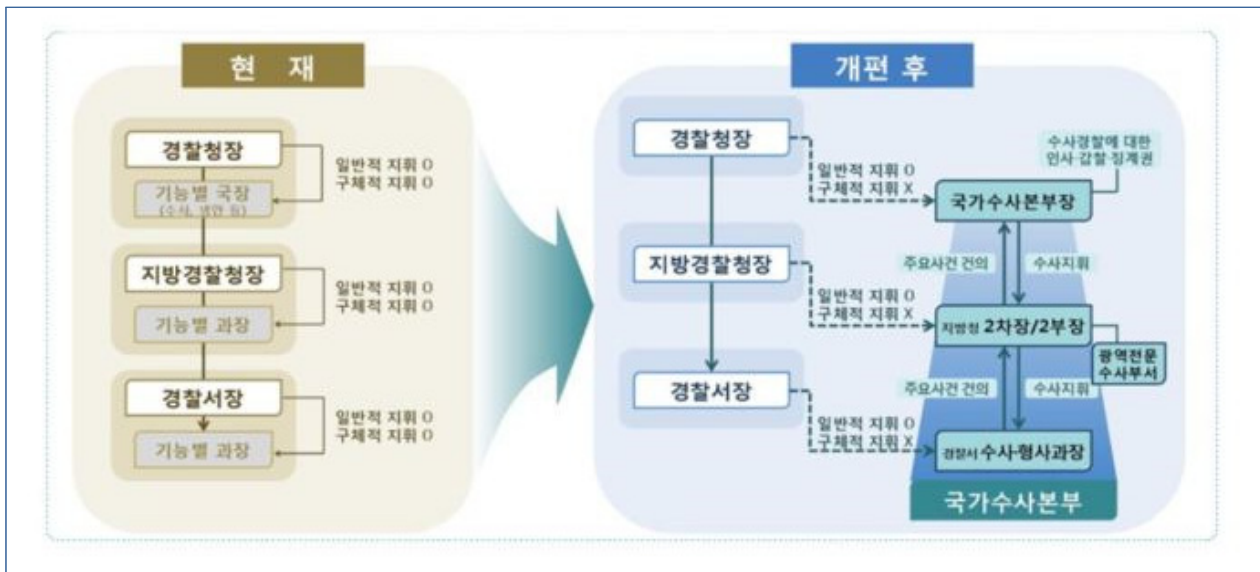
10) 수사권 조정은 검사 중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조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분산 시키는 것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사권 독립을 의미함(엄응용 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한국경찰연구』, 제18권, 2019.)

2. 주요내용

□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분산할 계획임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도모함
-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사무 지휘권한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기능을 행정경찰기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수사중립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이 일반적 수사지휘뿐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수행하고 있으나¹¹⁾, 향후에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¹²⁾만 허용할 뿐, 구체적 수사지휘¹³⁾는 금지하고,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설치된 지방수사조직을 총괄·지휘하도록 함

그림 1 |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 자료: 박병국,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라인 인사권 쥔다」, 『헤럴드경제』, 2019.5.21.

11)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2(경찰청장)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관장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지방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인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3조의3(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관서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수사간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12) 수사규칙·지침·절차 준수, 심야조사 금지, 2차 피해방지 등

13) 수사대상범위 설정,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법률적용 송치의견 등

Ⅲ.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주요 쟁점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국가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사법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한다고 하나, 수사종결권한 부여 등으로 막강해진 권한을 보유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이 자신을 보조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막강해진 경찰권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찰청은 독립 수사청¹⁴⁾을 설치하는 법안¹⁵⁾을 반대함. 그 논거로 지구대·파출소의 112범죄신고·출동단계부터 범죄자수배자에 대한 추적·검거·수사하는 과정까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행정경찰 업무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함¹⁶⁾
 - 이와 같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워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독립 수사청으로 전체 이관하는 법률안은 반대하면서,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수사청으로 이관될 경우 국가경찰은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밖에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이 국가차원의 치안사무¹⁷⁾ 뿐 아니라, 전국지역의 출동·수사사무 등 지역치안사무¹⁸⁾까지 대부분 전담하고, 자치경찰에게는 어린이·여성 보호 등 제한된 치안사무만 이관할 계획임

1. 국가경찰 권한의 비대화 해소 미흡

□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권한이 다른 국가경찰권한과 결합될 수 있어 경찰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¹⁹⁾임

-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겨두고 권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치안 서비스만 자치경찰에 분배함에 따라, 경찰권 분산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²⁰⁾
- 이처럼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경찰의 강력한 권력기관화 가능성이 있음

14) 독립 수사청은 경찰청과 검찰로부터 수사업무 전체를 이관 받아 수사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경찰청은 수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범죄예방 등 행정경찰업무를 수행함

15) 광상도의원대표발의, 「수사청법안」, 2018.

16) 제365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제5차, 2019.1.8. 29쪽

17) 경찰법령·통신·통계사무, 국가안보·공안사건, 전국규모의 사건,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등

18) 각 지역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진압, 지역총기단속, 지역유흥업소관리단속, 지역교통단속수사 및 운전면허관리, 지역112신고출동 등

19) 최영승, 「한국판 FBI 국장 차관급 국수본부장 기대와 우려」, 『머니투데이』, 2017.11.21.

20) 이원상, 「무늬만 자치경찰제 안된다」, 『세계일보』, 2018.10.22

-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범죄를 수사하는 체계는 종전과 동일할지라도, 향후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감사의 지휘 및 견제가 약화되어,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수사재량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²¹⁾을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경찰청은 약 30,000여명의 수사경찰공무원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경찰권한이 분산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확대된 수사재량권한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음

2.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장 설치의 한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 우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²⁾

- 국가수사본부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더라도 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데 있음.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에 경찰청장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임
- 그러나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외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²³⁾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인 내부경찰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거나 외부 인사(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²⁴⁾로 충원할 것으로 보임
-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경찰로 임용²⁵⁾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²⁶⁾에 따라 경찰청장이 내부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면 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이와 같이 경찰청장이 내부 경찰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추천하여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두는 것은 사법경찰 분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여도 임기제로 임용²⁷⁾되고 소속기관의 장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결정²⁸⁾되는 개방형직위의 한계로, 상관인 경찰청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사조직을 독립적

21)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제15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수사사무를 관장하며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2) 박찬운, 「경찰 수사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허프톤포스트코리아』, 2017.5.30.

23)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5조(국가수사본부장) ② 국가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며,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24) 경찰청 하부조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경우 해당 외부 인사는 임기제로 임용됨

25) 국가수사본부장은 별도의 독립기관장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경찰 임용방식을 따름

26)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27)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28)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이며, 그 임기연장 여부는 소속기관장이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하부조직²⁹⁾으로,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 이와 같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어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고유수사사무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운영 원리 상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전국 수사사무에 대한 지휘감독뿐 아니라 수사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실질적인 분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법」 등 조직법상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³⁰⁾, 설령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사권³¹⁾을 위임한다고 하여도³²⁾ 어디까지 위임할지도 명확하지 않음
- 또한, 경찰공무원 인력수급계획 및 예산 등에서 단독 수립·편성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수사경찰의 지휘·감독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가 모호함³³⁾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도모한다면, 지방수사조직의 분리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⁴⁾

-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 수사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것에 그칠 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조직체계에 대한 분리개편은 병행하지 않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여부가 불확실함
 - 전국 수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이를 이행할 지방수사조직을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별도로 두지 않고 현행과 같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소속으로 그대로 둔 채, 국가수사본부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함³⁵⁾
 - 이처럼 전국 범죄검거의 98% 이상을 수행하는 지방수사조직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행정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³⁶⁾의 소속으로 배치된 사법경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한편, 일반적인 수사·형사조직의 분리개편 뿐 아니라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조직에 대한 분리개편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업무는 일반적인 형사·수사부서가 아닌 경찰

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조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반장, 팀장 등의 명칭 사용)임

30) 「경찰법」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이하 생략)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2) 인사권 위임의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지방경찰청장 등으로 위임되는 체계인 것이지, 일개 내부부서장에게 인사권한이 위임되는 경우는 없음

33) 차정인, 「수사권조정 주요쟁점」, 『법조』, 제731호, 2018.

34) 박찬운, 「경찰 수사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히프톤포스트코리아』, 2017.5.30.

35) 유주성,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체계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자료, 2020.2.14.

36) 서울지방경찰청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청장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과 동일 계급인 치안정감임. 국가수사본부장이 해당 지방청장 소관의 수사공무원을 독립적으로 지휘감독 할 수 있을 지 의문임

청장·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지휘하는 보안국·생활안전국·교통국·외사국 등에 편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수사부서에 편제되지 않는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업무 등 까지 구체적으로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청 내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조직의 분리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⁷⁾

【표 2】 형사수사경찰 및 여청·교통조사 등 전체 수사 인력 총괄

(단위: 명)

수사		형사		사이버		과학 수사	여청 수사	교통조사		풍속단속		외사 수사	보안 수사	내부 비리 수사	지하철 수사		계
지원	수사	지원	수사	지원	수사			지원	수사	지원	수사				지원	수사	
3,369	6,431	999	8,097	247	1,560	1,229	3,864	204	3,413	37	124	382	452	8	20	116	30,552

※ 자료: 경찰청, 『수사경찰 관련 자료요청』, 내부설명자료, 2020.3.11.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예외적인 수사지휘권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장의 수사지휘 및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개혁관련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때³⁸⁾”에 경찰청장이 직접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할지라도 향후 ‘경찰청장 등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³⁹⁾
- 이와 같이 행정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직접 관여할 여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독립성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3. 경찰수사에 대한 책임체계 미흡

□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 국가수사본부장은 최대 약 30,000명의 수사경찰력을 보유한 조직이므로 경찰수사에 대하여 행정적·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해야 함.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를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 하위조직으로 구성함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을 독립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경찰청장)을 보조하는 직위로 설치함에 따라, 우리

37) 만약 국가수사본부의 총괄지휘범위에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찰청 내 수사지휘권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3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

3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9.6.

나라 국가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과정에 국회가 인사청문회⁴⁰⁾ 등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⁴¹⁾

- 또한, 인권침해·위법·부당한 수사 등이 발생하여도 국회가 경찰수사사무를 총괄⁴²⁾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⁴³⁾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책임추궁이 어려운 체제임⁴⁴⁾. 경찰청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⁴⁵⁾이나, 수사지휘가 금지되어⁴⁶⁾ 수사책임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국가경찰 수사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위의 부재가 우려됨⁴⁷⁾

4.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의 결합 우려

□ 독자적인 수사종결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찰이 정보경찰기능과 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경찰청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⁸⁾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 축소 등 정보경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경찰 폐지 등을 권고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⁴⁹⁾
 - 해당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정보수집범위의 개선을 도모함. 그러나 여전히 ‘공공안녕’의 개념에 대한 외연이 넓어 정보경찰 활동의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음. 향후에 경찰이 이를 확장·해석하여 현행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⁵⁰⁾
 - 특히, 경찰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정책정보’ 등을 정보경찰의 업무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경찰청은 「정보경찰 활동규칙(2019.1.22.)」을 제정⁵¹⁾하여 정보활동범위를 축소·한정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정보경찰이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수행과정의 문제점이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일은 치안활동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정책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주무부처에서 담

40) 인사청문회 대상: ①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의 후보자(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무위원(행정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1) 반면, 경찰청장은 향후 경찰수사사무에 개입하거나 수사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그 권한과 책임이 축소되어도 그 임명과정은 현행과 같은 엄격한 수준을 유지함(경찰위원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42)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제15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수사사무를 관장하며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3) 탄핵소추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

44)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기관(경찰청)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 내에는 신분이 보장됨.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본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면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45)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6)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제14조(경찰청장) ⑥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47) 이경렬,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형사정책』, 2018.

48) 소병훈의원대표발의,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 2019.3.15.

49) 주영재,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향신문』, 2020.3.1.

50)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9.6.

51) 정보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정보활동 범위(제4조) ① 범죄정보, ②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③ 국가중요시설·주요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④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과 다중집회에 따른 질서·안전유지에 관한 정보, 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⑥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정보, ⑦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

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조정과 통합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⁵²⁾

IV. 국가수사본부 설치 시 고려사항

□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한의 분산을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 수사권 조정은 검사 중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조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권 독립을 의미함.⁵³⁾ 이에 방대한 조직·인력과 정보수집권한 등을 보유한 국가경찰이 독립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권한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경찰청에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의 수사개입을 차단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도모하며, 광범위한 정보경찰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임
-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경찰권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찰권을 국가경찰이 그대로 유지하여 경찰권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이 무늬만 경찰인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중대한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재량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로 설치함에 따라 수사사무의 독립적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경찰의 경우에도 그 활동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 향후 정부안대로 전국지역 수사를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이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분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⁵⁴⁾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확대된 경찰권한이 국가경찰에 집중되는 체계를 분산·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수사조직의 분리개편과 함께 경찰수사사무를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경찰의 견제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위원 제청·임명이 정부중심⁵⁵⁾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경찰견제기능을 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등 통제권한을 두지 않아 현재의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⁵⁶⁾의 형식적 권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⁷⁾

52) 박병욱,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평』,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자료, 2020.2.14.

53) 수사권은 법률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여기에는 수사개시권·수사실행권·수사종결권 등이 모두 포함됨(엄응용 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한국경찰연구』, 제18권, 2019.

54)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치안현장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법부당한 경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예: 영국의 독립적 경찰감시기구 등)의 설치를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오창익, 「뭐가 경찰개혁인가」, 『경향신문』, 2020.1.30.)

5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6) 고승민, 「경찰청위에 경찰위원회 둔다...위원장은 장관급 추진」, 『NEWSIS』, 2017.11.14.

57) 박병욱,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평』,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자료, 2020.2.14.

- 또한, 경찰청은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및 ‘경찰사건 심사 시민위원회⁵⁸⁾’를 설치·구성하여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⁵⁹⁾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여 내부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⁶⁰⁾
- 이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 전체의 수사역량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임⁶¹⁾

V. 결론

-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한의 분리·견제를 도모하는 취지임
 -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함에 따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의 수사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여부,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의 미흡,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직위의 부재 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경찰청에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려는 논의에 대하여 수사와 정보수집의 결합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될 것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을 폐지·축소하여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됨. 다만, 자치경찰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지역 범죄수사를 국가경찰이 전담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축소로 확대된 수사권한이 단일명령체계의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임. 공권력의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통제와 감독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될 것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8) 외부위원6명,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

59) 2019년 5월 경찰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장심사관제의 경우 일부 수사관이 번거롭고 필요성이 낮게 느껴진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의뢰를 하지 않고, 영장심사관들은 수사부서 과립장과 의견 충돌 우려로 의견 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경찰청, 『경찰청 국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9.) 현직 경찰관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나 상급자가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는 방안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경찰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현직수사경찰이 작성한 회의자료 등을 토대로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내부 심의 위원회일 뿐,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60) 현재 「경찰법」 제24조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국가경찰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서 경찰이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상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내부지휘계통의 검토폐지 등 개선방안 확보가 필요함(강해인, 「백혜련 의원,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 이의제기권 강화...감찰요구제도 도입」, 『경기일보』, 2018.2.4.)

61) 함영욱 외, 「충남경찰의 수사개혁과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19.

참고문헌

- * 「경찰법」
- * 「경찰공무원법」
- * 「범죄수사규칙」
- *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 「공무원임용령」
- *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9.6.
- *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 소병훈의원대표발의,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 2019.3.15.
- * 곽상도의원대표발의, 「수사청법안」, 2018.
- * 제365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제5차, 2019.1.8. 29쪽
- * 경찰청, 『수사경찰 관련 자료요청』, 내부설명자료, 2020.3.11.
- * 경찰청, 『경찰청 국·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9.
- * 강해인, 「백혜련 의원,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 이의제기권 강화...감찰요구제도 도입」, 『경기일보』, 2018.2.4.
- * 고승민, 「경찰청위에 경찰위원회 둔다...위원장은 장관급 추진」, 『NEWSIS』, 2017.11.14.
- * 김선영 외, 「자치경찰제, 수사권과 묶으면 안돼..정보경찰 폐지해야」, 『세계일보』, 2020.2.10.,
- * 박경준, 「청, 수사권개혁 추진단 첫 회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착수」, 『연합뉴스』, 2020.2.21.
- * 박기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비대해진 경찰 권한도 견제」, 『이데일리』, 2020.1.13.,
- * 박병욱,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평』,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자료, 2020.2.14.
- * 박찬운, 「경찰 수사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허프톤포스트코리아』, 2017.5.30.
- * 안성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준비기구 설치..경찰개혁법 상반기 완료 추진」, 『중앙법률신문』, 2020.2.1.
- * 엄응용 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한국경찰연구』, 제18권, 2019.
- * 오창익, 「뭐가 경찰개혁인가」, 『경향신문』, 2020.1.30.)
- * 유주성,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체계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20.2.14.

참고문헌

- * 이경렬,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2018.
- * 이동희 외,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경찰청 정책 연구용역, 2012.
- * 이원상, 「무늬만 자치경찰제 안된다」, 『세계일보』, 2018.10.22
- * 임기창, 「검찰직접수사 폭넓게 인정한 수사권 조정안은 미흡」, 『연합뉴스』, 2018.7.7.
- * 주영재,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향신문』, 2020.3.1.
- * 차정인, 「수사권조정 주요쟁점」, 『법조』, 제731호, 2018.
- * 최대현 외,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가수사시스템의 발전방향 모색; 영국과 미국의 수사시스템을 참고하여』, 경찰청 정책연구 용역과제, 2017.
- * 최영승, 「한국판 FBI 국장 차관급 국수본부장 기대와 우려」, 『머니투데이』, 2017.11.21.
- * 한동훈, 「수사권 조정안 통과...이제는 경찰개혁안 도마위에 오른다」, 『서울경제』, 2020.1.13.
- * 함영욱 외, 「충남경찰의 수사개혁과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19.
- * 허진,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서울경제』, 2019.12.30.,
- * 허진무, 「행안부도 수사권 조정 후속 TF 설치,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 등 4개팀으로」, 『경향신문』, 2020. 2. 11.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48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2020.6.16.	하혜영
제147호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2020.6.16.	조인식
제146호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2020.6.16.	박혜림
제145호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2020.6.9.	형혁규
제144호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2020.6.4.	김여라
제14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2020.6.4.	박준환
제142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2020.6.3.	조서연
제141호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2020.5.30.	김진수
제140호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5.30.	유재국
제13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5.30.	문은희
제138호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과제	2020.5.30.	조영은
제137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5.29.	노성준
제136호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20.5.27.	김창호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5.19.	최병근
제134호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5.4.	허민숙
제133호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4.28.	김예성
제132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20.4.7.	정준화
제131호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2020.4.3.	최미경
제130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4.2.	박진우
제129호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4.1	김경민

제149호

NARS

현안분석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